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김제리 의원 외 10명
- 나. 의안번호 : 제1546호
- 다. 제출일자 : 2016. 11. 25
- 라. 회부일자 : 2016. 11. 28

2. 주 문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 부과되는 과태료의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감경근거 및 감경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비롯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감경기준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임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의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나. 기타사항: 없음
-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현행 유지 필요
 - '15년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율(81.6%)은 서울시 전체 과태료 평균 징수율(61.4%)보다 높고,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로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반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과태료 감면시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 필요함

4. 이 송 처

- 가. 국 회 : 국회의장
- 나. 정 부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 요

- 동 건의안은 『도로교통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비롯한 일부 위반행위의 경우 다른 항목과는 달리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다른 조항들과 같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¹⁾에 따르면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행정청은 금액의 2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²⁾ 등에서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과 같은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³⁾에서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면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는 전체 과태료 항목 29건⁴⁾ 중 감경기준에 포함된 항목은 15개⁵⁾에 불과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비롯한 14개 항목은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임

※ 참고 :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중 감경, 비감경 항목 현황

구분	감경 항목(15건)	비감경 항목(14건) ⁶⁾
과태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속도 위반 - 주정차 위반 - 물튀김 - 창유리 투과율 기준위반 - 동승자 안전띠 위반 - 동승자 인명보호장구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취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및 운전자 안전교육 위반 - 고속도로 등 준수사항 위반 -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적성검사 위반 - 보호구역 속도 및 주정차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위반 - 중앙선위반 - <u>전용차로 통행위반</u> - 끼어들기 위반 - 교차로 진입위반 - 도로가장자리 진로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위반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 신고 위반 - 강사의 인적사항 및 교육과목 게시위반 - 수강료 게시 위반, 수강료 반환 위반 - 학원 휴원 및 폐원 신고 위반 - 게시문이나 설치시설물 못쓰게 비치 위반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본문관련 별표6, 별표7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관련 별표39
-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 26건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가기준)에 따른 3건
-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관련 별표39

- 과태료 비감경 항목 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전용차로 위반”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192,466건, 부과금액은 9,633백만원에 이르며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1,683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건수는 4,273건 증가하고 체납금액 또한 166백만원 증가하는 등 과태료 체납방지 및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제도 활용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참고 :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3년간)

(단위 : 건/ 백만원, % '16. 9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92,466	9,633	155,448	7,905	35,310	2,123	77.97
2016.9	67,461	3,376	51,943	2,610	14,781	802	75.6
2015	69,144	3,459	58,128	2,955	10,508	636	81.6
2014	55,861	2,798	45,377	2,340	10,021	685	76.7

- 또한 서울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기준을 근거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여부를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장이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의 규정과 달리 서울시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할 수 없다는 회신⁷⁾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자진 납부를 통한 감경규정 마련을 통해 법적 형평성 개선은 물론 과태료 체납예방과 과태료 집행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비감경 항목 중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이며, 다른 13개 항목에 대한 부과권자는 지방경찰청장, 구청장 및 교육감 등임

7)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2174(2013.11.22.)